

<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침 개정사항 >

페이지	개정 전	개정 후
7쪽	○ (동료상담가 자격요건)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모집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*로서,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(참고1) * 단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인 고용부 “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” 수행기관이 “중증장애인 동료상담”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준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를 동 사업의 동료상담가로 채용 가능 ** 동료상담가 활동을 위해 이직 예정자는 증빙서류(사직서 등) 확인 후 입사지원 가능	○ (동료상담가 자격요건)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(참고1) * 유사사업인 고용부 “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” 수행기관이 “중증장애인 동료상담”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준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를 동 사업의 동료상담가로 채용 가능 ** <u>동료상담가 채용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(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에 따른 취업 제한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유의</u>
7쪽	< 동료상담가 자격요건 > ①~② (생략) ③ 사도(광역) 정신건강증진센터, 전주시 Peer들이 사업의 정신 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~⑨ (생략)	< 동료상담가 자격요건 > ①~② (생략) ③ 사도(광역) 정신건강증진센터, 전주시 Peer들이 사업의 정신 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~⑨ (생략)
10쪽	< 참여 승인 절차 및 방법 > ① (생략) ② 【검토】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* 중증장애인 여부는 <u>지자체(사회보장정보시스템-행복e음)에서 확인 가능</u> ③ (생략)	< 참여 승인 절차 및 방법 > ① (생략) ② 【검토】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* 중증장애인 여부는 <u>장애인증명서(정부24 발급), 장애인 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등을 통해 확인</u> ③ (생략)
10쪽	- (동료상담 활동 제공) 동료상담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 동료상담(5회), 기본 동료상담(5회) 및 심층 동료상담(5회) 등 참여자 1인당 최대 15회까지 제공 가능 < 동료상담가 운영 > ○ 참여자 1명 기준으로 동료상담활동 5회 참여를 1set로 관리, 참여자는 최대 3set(최대 15회)까지 참여 가능 - 수행기관 및 참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료 상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함 * (예시) A기관에서 기초동료상담을 마친 참여자가 이 사 등으로 상담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전 입지 인근 B기관에서 기본 및 심층 동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A기관은 기존에 수행된 기초 동료상담일지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가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○ 단계별 동료지원활동은 참여자 당 1일 1회만 인정 (신설)	- (동료상담 활동 제공) 동료상담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 동료상담(5회), 기본 동료상담(5회) 및 심층 동료상담(5회) 등 참여자 1인당 최대 15회까지 제공 가능 < 동료상담가 운영 > ○ 참여자 1명 기준으로 동료상담활동 5회 참여를 1set로 관리, 참여자는 최대 3set(최대 15회)까지 참여 가능 - 수행기관 및 참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료 상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함 * (예시) A기관에서 기초동료상담을 마친 참여자가 이 사 등으로 상담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전 입지 인근 B기관에서 기본 및 심층 동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A기관은 기존에 수행된 기초 동료상담일지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가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○ 단계별 동료지원활동은 참여자 당 1일 1회만 인정 ○ <u>집단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의 상담실적은 동료상담에 참여한 참여자 수로 산정</u>
13쪽	- (사용범위) 동료상담가의 임금, 주휴수당, 사회보험료,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동료상담활동 관련 여비, 회의비 등 운영비, 홍보비 등에 사용 (신설)	- (사용범위) 동료상담가의 임금, 주휴수당, 사회보험료,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동료상담활동 관련 여비, 회의비 등 운영비, 홍보비 등에 사용 * <u>결근자·중도참여·중도종료자 발생 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</u> (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준용)

페이지	개정 전	개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쪽	- (지급기준)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동료상담가가 중증장애인에게 월 10회 이상 당사자간 상담, 정보 공유,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동료상담가 1인당 10만원 지급 (신설)	- (지급기준)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동료상담가가 중증장애인에게 월 10회 이상 당사자간 상담, 정보 공유,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동료상담가 1인당 10만원 지급 <u>* 상담실적이 10회 미만인 경우 성공률에 따라 지급</u> <u>(예시 : 7회 상담시 7만원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7쪽	서식4 (지자체) 수행 기관 선정 심사표 <table><tr><th rowspan="2">영역</th><th rowspan="2">평가항목</th><th rowspan="2">배점</th><th colspan="5">평가결과(“○”)표시</th></tr><tr><th>매우 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 미흡</th></tr><tr><td>수행기관 (30점)</td><td>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16</td><td>12</td><td>8</td><td>4</td></tr></table>	영역	평가항목	배점	평가결과(“○”)표시		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수행기관 (30점)	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	20	20	16	12	8	4	서식4 (지자체) 수행 기관 선정 심사표 <table><tr><th rowspan="2">영역</th><th rowspan="2">평가항목</th><th rowspan="2">배점</th><th colspan="5">평가결과(“○”)표시</th></tr><tr><th>매우 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 미흡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수행기관 (30점)</td><td>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</td><td rowspan="4">20</td><td rowspan="4">20</td><td rowspan="4">-</td><td rowspan="4">12</td><td rowspan="4">-</td><td rowspan="4">4</td></tr><tr><td>-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수행기관 : 20점</td></tr><tr><td>-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료상담 : 12점</td></tr><tr><td>-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수행 경험 : 4점</td></tr></table>	영역	평가항목	배점	평가결과(“○”)표시		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수행기관 (30점)	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	20	20	-	12	-	4	-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수행기관 : 20점	-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료상담 : 12점	-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수행 경험 : 4점
영역	평가항목				배점	평가결과(“○”)표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	미흡	매우 미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행기관 (30점)	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	20	20	16	12	8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역	평가항목	배점	평가결과(“○”)표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행기관 (30점)	2.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	20	20	-	12	-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수행기관 : 20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료상담 : 12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수행 경험 : 4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8쪽	서식25 (지자체)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점검 담당자(지자체) 기관명 : 직위 : 성명 : 서명 또는 (인)	서식25 (지자체)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<u>점검 기관 확인</u> 직위 : 성명 : 서명 또는 (인) <u>점검 담당자(지자체)</u> 직위 : 성명 : 서명 또는 (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1쪽	①~② (생략) ③ 사도(광역) 정신건강증진센터, 전주시 Peer들이 사업의 정신 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~⑨ (생략)	①~② (생략) ③ 사도(광역)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주시 Peer들이 사업의 정신 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~⑨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